

의안번호	2125439
의 퇴 인	박주민 의원
회 답 일	2023. 12. 18.
추 계 번호	23D4746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의4(도급계약에 관한 적정임금 지급의 원칙)	-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도급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소속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및 기능의 근로자에게 안 제6조의6에 따른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6조의6(적정임금의 산정 등)	-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직종별·기능별 적정임금을 고시하여야 함(제1항) -적정임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5항)	의무규정
		-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임금의 산정을 위한 조사·연구를 위탁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의4(도급계약에 관한 적정임금 지급의 원칙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6조의6(적정임금의 산정 등)	

2. 상세 사유

- 일부 도급계약의 계약상대방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를 부과(안 제6조의4)
 -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의 제출¹⁾, 근로관계법령 준수²⁾ 등의 의무를 부과받음

-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은 근로를 제공하는 소속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및 기능의 근로자에게 ‘적정임금’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의무를 부과함
- 현행 도급계약에 반영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안 제6조의6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‘적정임금’ 수준보다 낮은 경우에는, 도급계약금액에 적정임금에 따른 노무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서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도급계약의 기준, 근로자의 직종·기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, 행정안전부장관이 향후 고시할 적정임금의 수준을 현재 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□ 행정안전부장관의 직종별·기능별 적정임금 고시(제6조의6)

-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직종별·기능별 적정임금을 고시하도록 하고, 적정임금의 산정을 위한 조사·연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 - － 직종별·기능별 적정임금은 해당 직종 및 기능의 임금 평균값, 중위값, 최빈값 중 하나의 값으로 정함
-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직종별·기능별 적정임금을 고시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조사·연구를 수행할 경우 위원회 운영경비 또는 연구용역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적정임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, 직종별·기능별 분류에 따라 전문위원회 수 또는 연구용역의 수 등이 달라지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적정임금의 산정에 필요한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1) 현행법 제6조의2(청렴서약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(隨意契約)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② (생략)

2) 현행법 제6조의3(근로관계법령의 준수)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(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)의 근로조건이 「근로기준법」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한예슬	오명희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한예슬	02-6788-4831	yeseulhan@nabo.go.kr